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05

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 김기표 • 박희승 • 전재수

권칠승 • 문진석 • 위성곤

부승찬 • 안규백 • 김영호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, 수사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 권과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 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되었음.

개정된 「형사소송법」은 제312조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에 대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 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 고, 제2항은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 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였음.

「군사법원법」은 「형사소송법」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「군사법원법」 제365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

가 발생하고 있음. 이에 2020년 「형사소송법」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,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65조제2항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「군사법원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①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,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 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365조(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 관의 조서) ① 군검사가 피고인 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 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 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 정되고,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(信憑)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 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(眞正) 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 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 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 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,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 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 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 다.

제365조(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 관의 조서) ①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서 공판준비, 공판기일에 그 피 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 여 증거로 할 수 있다.

<u><</u>삭 제>

③ ~ ⑥ (생 략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